



녹색금융/ESG국제 심포지엄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정 동향과 대응 방안

한국회계학회, 발표자 정준희

2024. 11. 25. 콘래드 서울

CONTENTS

01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및 문제점

02 문제점 발생의 원인

03 정책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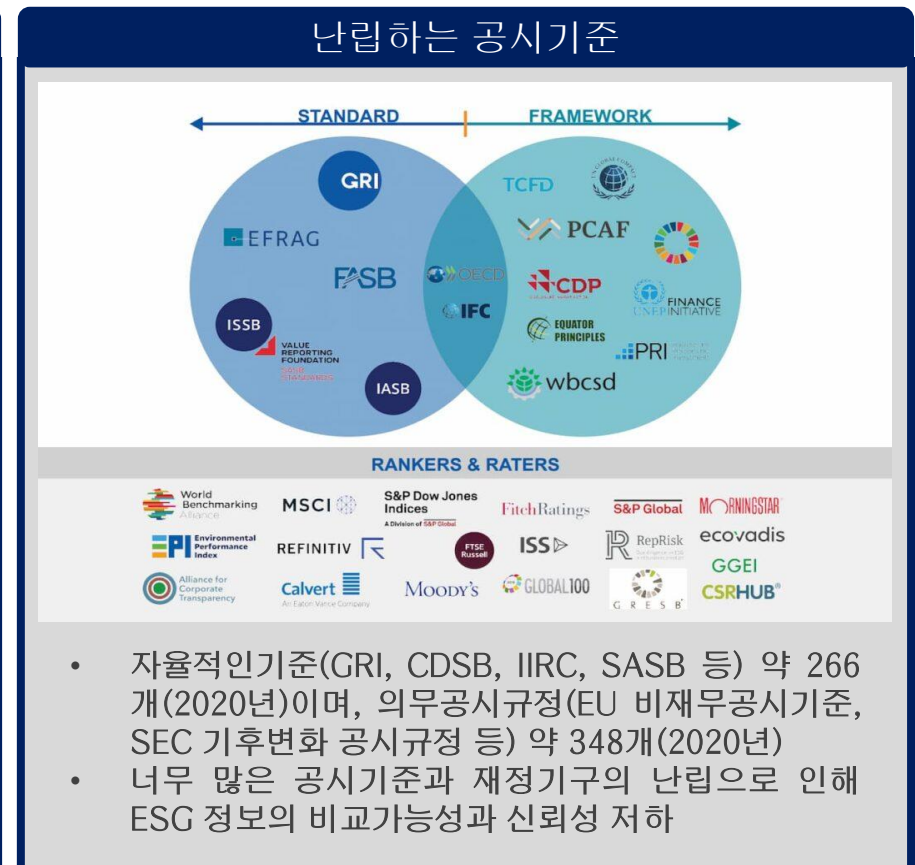
04 대응방안

05 결론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및 문제점

ESG 기준 난립

ESG 기준 난립으로 인한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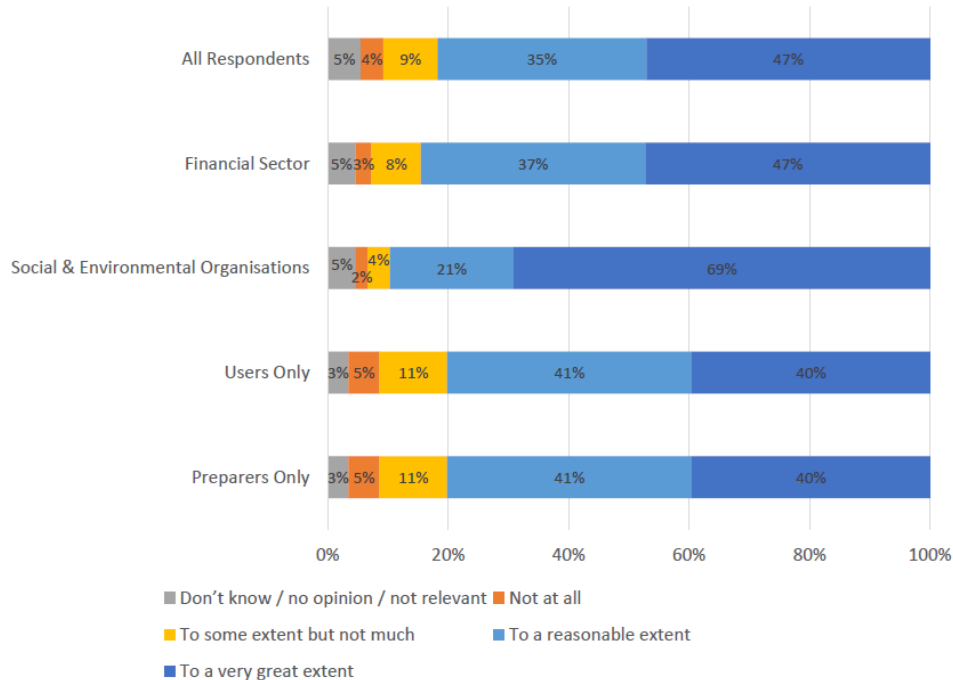
출처: 세계경제포럼(WEF), ESG 생태계 지도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및 문제점

NFRD 실패 요인 2018년 유럽이 전격적으로 도입한 NFRD는 왜 실패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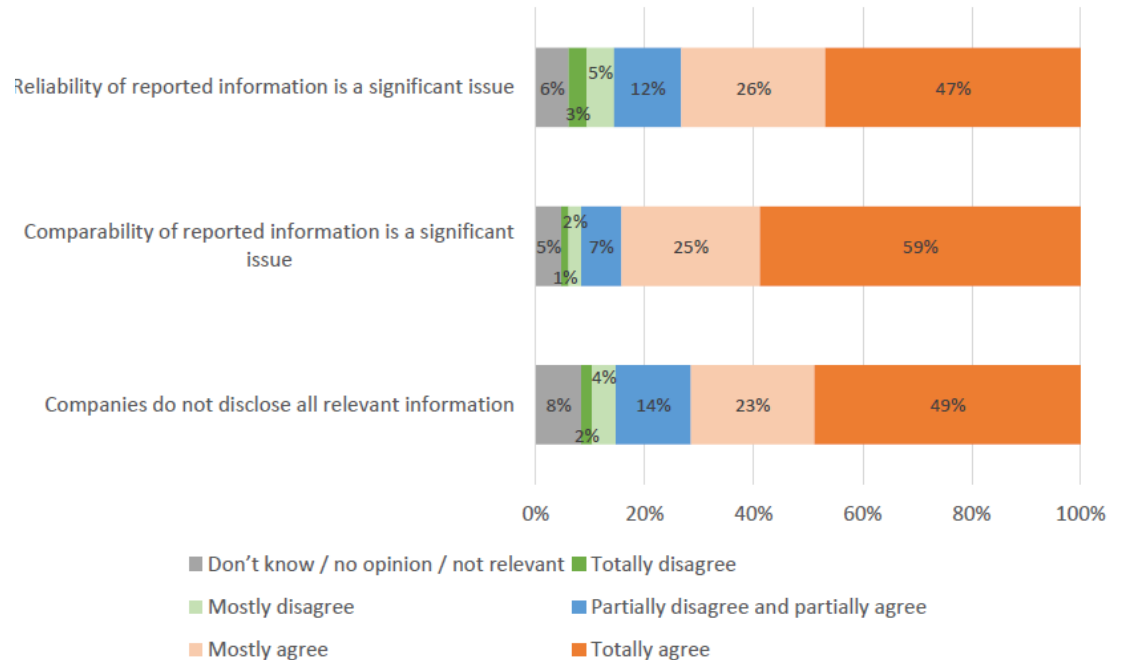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답변

To what extent would a requirement on companies to apply a common standard for non-financial information resolve the problems identified?



비교가능성(84%), 신뢰성(74%), 가치관련성(70%) 부족

Respondents views on issues on information currently reported by companies under the NFRD - Users only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기준 통일

ISSB, CSRD, SEC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통일

TCFD를 기반으로 한 ISSB, CSRD, SEC 기후공시 규정으로 통합



1)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제단) 산하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보고기준).
 2) EU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3) US SEC(美 증권거래소) Climate disclosure.
 Source: 각 기관 공개자료, 미디어 리서치, KP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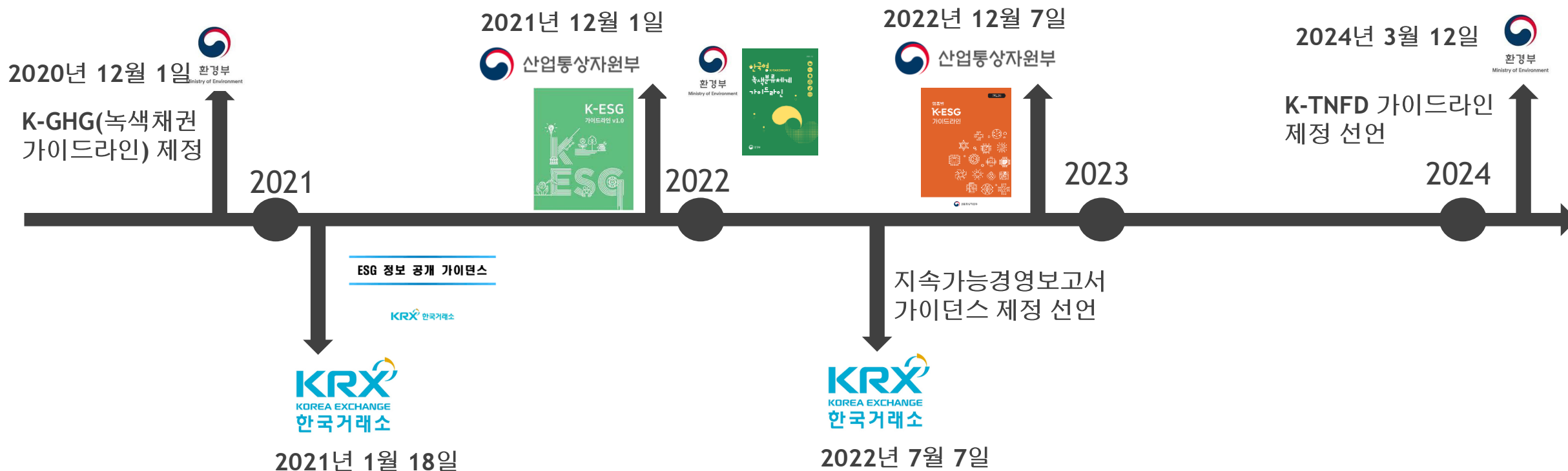
ISSB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니셔티브 통합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및 문제점

부처별 가이드 발표

한국만의 가이드라인 발표. 부처별 통합 부재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및 문제점

정부가 ESG 주도

부처간 다양한 공시기준을 제정하여 혼란을 자초, 기업은 정부에게 가이드 요구

부처 간에도 공시기준 난립, 민간보다 정부 주도



한국ESG기준원
Korea Ins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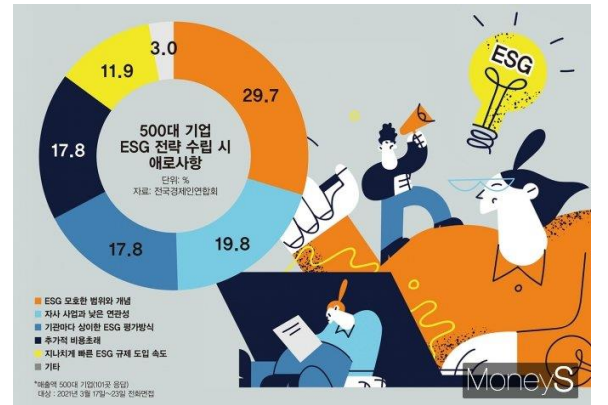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들의 수용성 저하

ESG 전략 수립 시 애로 사항



한국만의 가이드라인 제정 급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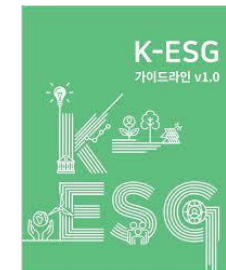
ESG 평가기관 난립에 기준 제각각...한국형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서울경제 원문 : 기사전송 2021-04-02 18:15 최종수정 2021-04-02 18:52

시뮬레이션 요약



■ '고무줄' ESG 평가에 기업 혼란; 최신 경영 트렌드 타고 평가지표 우후죽순; 평가 기준 '대외비'에 결과도 들쭉날쭉; 객관적 가이드라인 필요 목소리 높아; 정부 등 새 지표 마련 작업에 착수; 일부기관 급진적 기준 도입해 논란도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및 문제점

영향중요성 중시

GRI 중심의 지속가능보고서. 투자자 보단 이해 관계자 중심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준	개	비중	개	비중	개	비중	개	비중	개	비중	개	비중	개	비중
전체	127		129		130		135		149		188		220	
GRI	119	94%	120	93%	124	95%	129	96%	144	98%	185	98%	216	98%
IIRC	19	15%	17	13%	19	15%	19	14%	25	17%	24	13%	18	8%
SASB	0	0%	1	1%	2	2%	3	2%	21	14%	100	53%	145	66%
TCFD	0	0%	0	0%	0	0%	3	2%	15	10%	99	53%	127	58%
UNgc	4	3%	4	3%	3	2%	2	1%	2	1%	25	13%	65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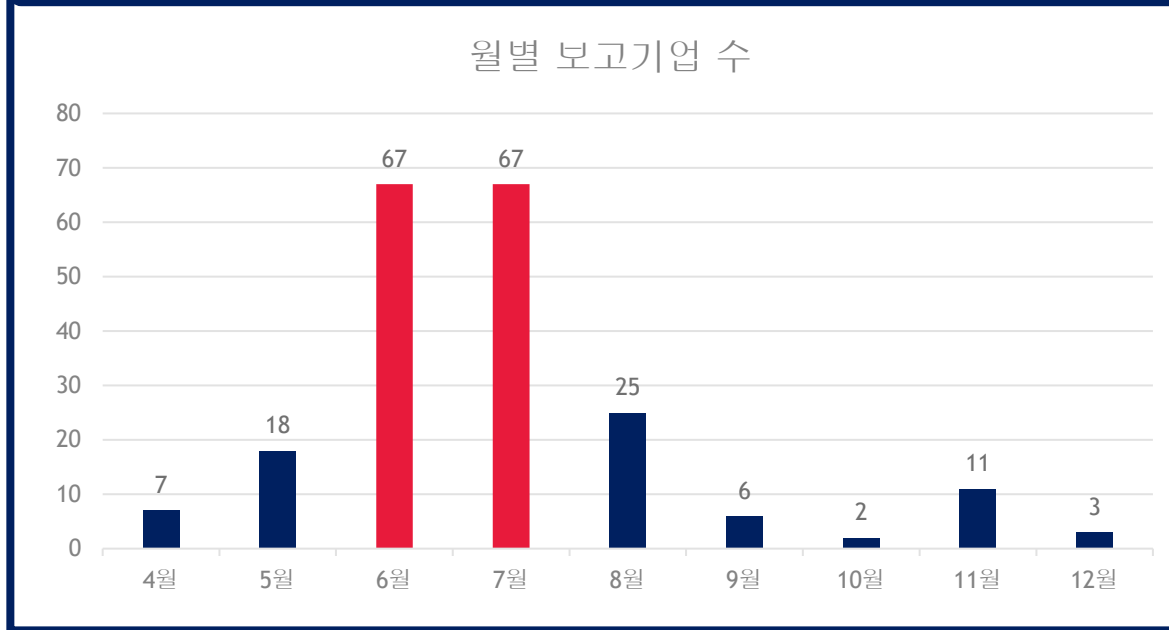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및 문제점

공시시점

K평가기관 평가시점에 대응한 공시

특정평가기관에 대응한 보고시점

월별 보고기업 수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고기업(수)	7개	18개	67개	67개	25개	6개	2개	11개	3개
비율	3.40%	8.74%	32.52%	32.52%	12.14%	2.91%	0.97%	5.34%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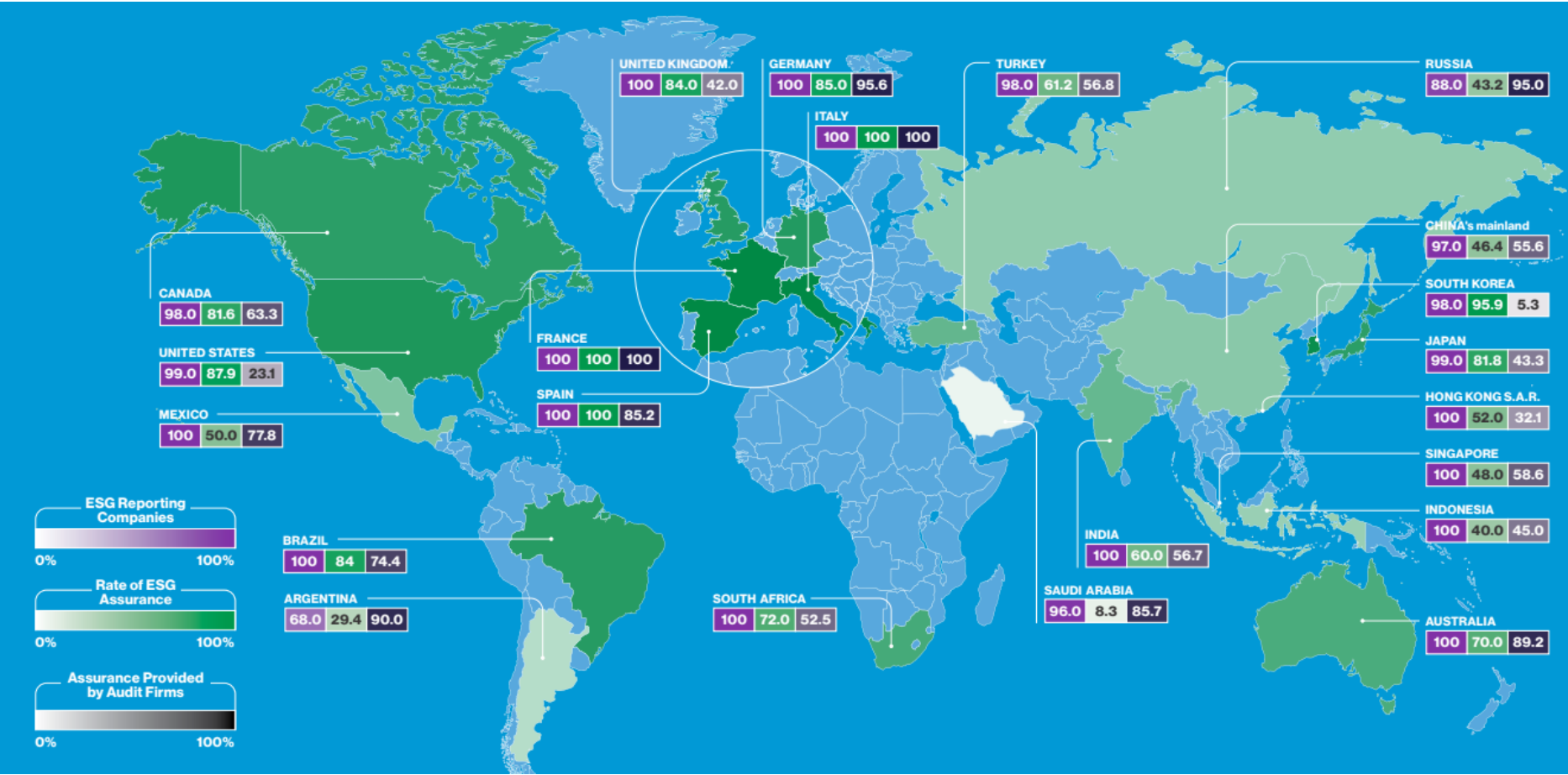
6, 7월에 집중. 투자자 보단 이해관계자 대응

- 사업보고서 공시가 끝나고, 국내 유력 평가기관의 평가 확정 직전인 (8월)인 6, 7월에 집중되어 있음
-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보다 특정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나타난 결과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및 문제점

인증 현황

양적수준에 비해 낮은 질적 수준



- 양적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 낮음
- 과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인증의 양적 수준(98%)은 글로벌 수준과 비슷
 - 하지만 질적수준은 매우 낮은 편 (감사인 비중 5%, 22개국 중 22등)

출처: IFAC(2024) ‘The state of play: sustainability disclosure & assurance 2019-2022 Trends & Analysis’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및 문제점

인증 현황

양적수준에 비해 낮은 질적 수준

COUNTRY	ISAE 3000	ISAE 3410	AA1000AS	ISO 14064-3	Other
ARGENTINA	80%	0%	0%	0%	20%
AUSTRALIA	95%	35%	3%	0%	5%
BRAZIL	79%	2%	2%	7%	12%
CANADA	51%	49%	0%	29%	10%
CHINA	64%	4%	36%	4%	9%
FRANCE	100%	0%	0%	0%	0%
GERMANY	96%	6%	2%	1%	1%
HONG KONG	93%	25%	7%	7%	0%
INDIA	79%	9%	16%	3%	4%
INDONESIA	50%	5%	40%	0%	10%
ITALY	97%	5%	2%	0%	0%
JAPAN	77%	44%	7%	38%	1%
MEXICO	93%	0%	4%	0%	7%
RUSSIA	90%	5%	0%	5%	5%
SAUDI ARABIA	100%	43%	0%	0%	0%
SINGAPORE	76%	24%	10%	10%	0%
SOUTH AFRICA	55%	40%	15%	15%	13%
SOUTH KOREA	13%(22위/22개국)	4%(17위/22개국)	35%(3위/22개국)	42%(2위/22개국)	14%(1위/22개국)
SPAIN	85%	3%	8%	11%	2%
TURKEY	59%	36%	2%	25%	14%
UNITED KINGDOM	68%	29%	4%	20%	9%
UNITED STATES	41%(or +AICPA 21%)	3%(or +AICPA 21%)	5%	43%	6%

문제점 발생의 원인

메커니즘 미작동

지속가능성 정보와 기업가치간 관련성에 대한 메커니즘 미작동

미국자본시장과 국내자본시장간 공시 메커니즘 차이

**기업들이 정보를 지속가능 정보를 생성하고 공시하는 목적은 자기자본비용을 낮추기 위함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음**



- 미국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와 기업가치간 정(+)의 관련성이 존재
- 그러나 Dhaliwal et al.(2011)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와 기업가치 간 유의적인 관련성 없음
- 즉, 국내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음

Dhaliwal et al. (2011), ' Voluntary Non financial Disclosure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The Initi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6(1): 59-100.

문제점 발생의 원인

메커니즘 미작동

왜 국내 기업들은 정부에게 지속가능성 가이드를 바라는가?

자본시장의 평가보다 정부나 총수일가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

국내 경영자는 외부 Buy Side의 투자자의 압박이 낮음. 즉, 자기자본비용 절감에 관심이 없음. 따라서 지속가능 보고서는 홍보나 정부규제 대응용으로 작성

지속가능성 정보

- 보고서 작성 및 인증
- (기업 및 감사인)
- 아마존, 애플, 구글 등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정보비대칭 완화

- Sell Side 분석
- (증권, 은행 등)
- 골드만 삭스, 모건스탠리 등
-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자본비용 감소 (기업가치 상승)

- Buy Side 투자
- (기관투자자, 자산운영사)
- 블랙락, 피델리티 등
- 국민연금, 미래에셋자산운용사

- ❖ 미국은 Buy Side의 영향력이 가장 높음.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Buy Side가 아닌 기업 및 정책당국의 영향력이 높음
- ❖ 특히, Buy Side가 총수일가와 관계가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 불특정 투자자보다 경영권을 가진 총수일가의 영향력이 높음

해외동향

다수의 국가들이 재정기구 설립 후 FY2024년 이후부터 의무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규제 개요	FY23	FY24	FY25	FY28
IFRS ¹⁾ ISSB ¹⁾ 영국, 호주, 일본 등 IFRS 채택 국가 중심으로 ISSB 공시 규제 도입 중		각 국 적용 권고 ²⁾	국가별로 기준 적용 여부 결정	
ESG 정보공시 의무화 - 금융위, 국내 ESG 정보공시 의무화 로드맵 수립중 (내년 1분기 이후 발표 예정) - 당초 FY24 공시 의무화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KSSB 기준 마련 중, FY25 이후 적용
EU CSRD ³⁾ (ESRS ⁴⁾ 기준 - FY24 EU 상장 대기업부터 적용 예정 - '17년부터 시행된 NFRD⁵⁾ (비재무보고지침) 고도화		EU 내 상장 대기업	EU 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⁶⁾	CSRD 해당사의 연결 모기업
US SEC 기후공시 ⁷⁾ 당초 FY23 공시 의무화 예정이었으나, 확정안 발표 지연 중	의무화 적용 지연 중	미국 내 상장 대기업	제3자 인증 의무	

1)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제단) 산하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보고기준);
 2) S2에 한하며, S1은 26년 공시 적용, Scope 3은 시행일로부터 최소 1년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3) EU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4)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이행에 사용되는 공시표준;
 5) Non 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유관비재무보고지침);
 6) 매출 0.4억 유로, 자산 0.2억 유로, 종업원 250인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회사/법인;
 7) US SEC(美 증권거래소) Climate disclosure;
 Source: 각 기관 공개자료; 미디어 리서치; KPMG

주요 관할권별 공시제도(안) 및 기준개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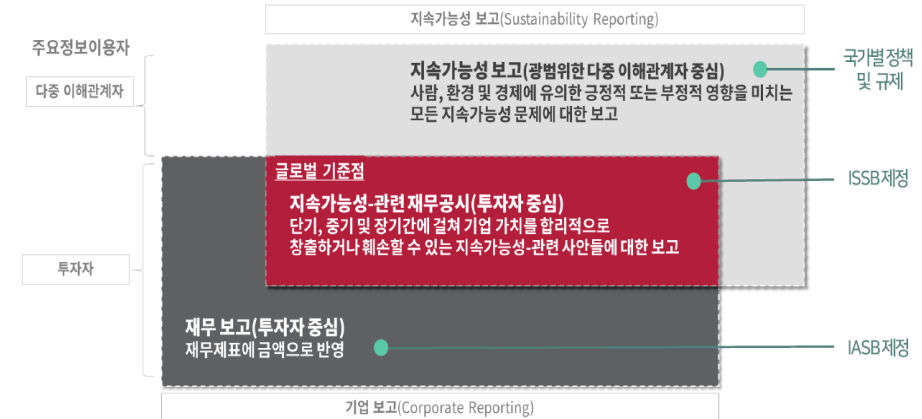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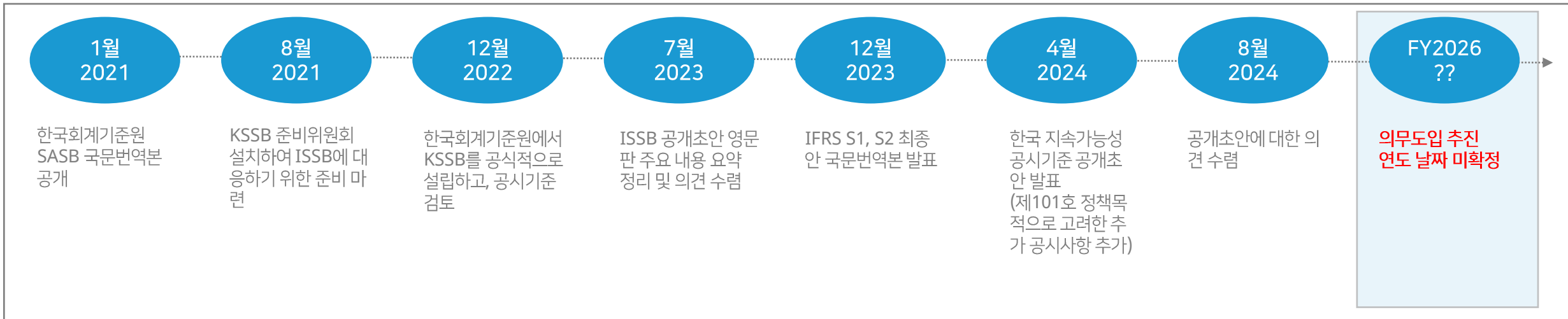
관할권	관할당국	공시제도	기준제정기구	기준제정경과	다음 단계	적용대상	보고연도	인증 요구
	EC	CSRD	EFRAG	ESRS 채택 '23.7월	SME 기준 '24년 산업별 기준 '26년 비EU 기준 '26년	EU 대기업, 상장 SME, 비EU기업	'25년 FY24	제한적 인증 3년 이내 합리적 인증 고려
	FSA		SSBJ	ED 의견수렴 중 '24.3월~7월	최종 기준 발표 '25.3월 예정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주요 상장기업	'27년 FYB26 or '28년 FYB27	요구 '28년부터
	SEC	SEC 규칙	SEC	최종안 승인 '24.3.6일	미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후 발효 예정	모든 공개기업	'26년 FYB25	제한적 인증 일부 기업은 4년 후 합리적 인증
	CSA		CSSB	ED 의견수렴 중 '24.3월~6월	최종 기준 발표 '24.4분기 예정	증권 발행자	자발적 '26년 FY25	
	재무부		AASB	ED 의견수렴 완료	최종 기준 발표 '24.6월 예정	기업법 제2M장 연차보고서 제출 기업	'26년 FYB25	제한적 인증 '30년까지 합리적 인증 고려
	DBT		DBT	IFRS S1 및 S2 승인 의견수렴 완료	UK SDS 발표 '25.1분기 예정	(상장기업-FCA가 결정) (등록법인-영정부가 결정)	'27년 FY26	
	재정부		재정부	일반 기준 ED 의견수렴 중 '24.5월~6월	일반/기후기준 '27년 기후 외 기준 '30년 산업별지침 '30년	관련 규정에 따른 중국 국경 내 모든 기업	미정	
	회계기업관리청		SGX	ED 의견수렴 완료	최종 기준 발표 일정 미정	소 상장기업, 대형 비상장사	'26년 FY25	제한적 인증

* 보고연도: 대다수가 단계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보고연도를 안내함

정책적 동향

ISSB 기준 도입

KSSB를 설립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러나 의무화 시기 미정



ISSB 기준 도입

KSSB를 설립하고 IFRS S1, S2 도입



ISSB의 IFRS S1, S2 전면 도입. 추가적으로 선택가능 제101호 제시

-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일반사항’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 내용 및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 (ISSB IFRS S1과 거의동일)
-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를 중점적으로 다룸 (ISSB IFRS S2와 거의동일)
- 공시기준서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사항’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공시가 필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한국의 기준)
- 공시기준서는 제1호 및 제2호와 달리, 기준의 적용 여부나 세부 공시 요구사항별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

ISSB 기준 도입

KSSB를 설립하고 IFRS S1, S2 도입



ISSB의 IFRS S1, S2 전면 도입. 추가적으로 선택가능 제101호 제시

- 공시기준서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일반사항’은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때 적용되는 개념적 기반과 공시 내용 및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 (ISSB IFRS S1과 거의동일)
- 공시기준서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를 중점적으로 다룸 (ISSB IFRS S2와 거의동일)
- 공시기준서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사항’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공시가 필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한국의 기준)
- 공시기준서는 제1호 및 제2호와 달리, 기준의 적용 여부나 세부 공시 요구사항별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

ISSB 기준 도입

IFRS S1, S2 +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01호 공개초안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01호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다음의 사항도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정보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이미 공개 중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 정부 관계부처 및 위원회 등의 정책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01호 공개초안의 적용여부와 세부 공시 요구사항별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개념적 기반과 일반 요구사항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 따른 공시를 작성할 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공개초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나 위원회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

- 17 정부 부처나 위원회 등의 정책 중 일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은 문단 18~23의 공시 요구사항 중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을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다.
- 18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의 정책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공시한다.
- (1)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출산휴가 대상 직원 수 대비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 수 비율. 이를 공시할 때, 성별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적용 대상 총 직원 수 대비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수 비율.-중략
- 19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의 예방을 위한 기업의 정책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공시한다.
- (1)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른 강제근로의 금지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업이 취한 관련 조치
- 20 기업의 안전 경영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공시한다.
-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업의 경영방침
- (2)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 조직.-중략

의무화 미확정 기준은 KSSB로 귀결되나 의무화는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다수의 국가들이 ISSB 의무도입 확정

브라질, IFRS S1·S2 채택...2026 회계연도부터 '합리적 확산' 수준 인증과 함께 의무화

10월 20일 브라질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를 채택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포르투갈어로만 제공)함. 같은 날 ISSB도 브라질의 IFRS S1·S2 기준서 채택 소식을 [인내](#)함. 앞서 지난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 IOSCO) 아시아는 IFRS S1·S2 기준에 대한 공식 지지지를 표명하고 130개 회원국에 기준 채택을 촉구한 바 있으며 브라질 또한 IOSCO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출처: 뉴스데일리 2023-10-20, 'IOSCO, IFRS S1·S2 공식 지지 표명-한국 포함 130개 회원국에 기준 채택 촉구' 링크)

브라질 재무부와 증권위원회는 IFRS S1·S2 채택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자본조달 및 글로벌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상장기업, 투자펀드 및 유통화전문회사는 ISSB가 발표한 시행일과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적용이 의무화됨. 또한 공시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기간에도 제한적 확산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적용이 의무화되는 시점부터는 합리적 확산 수준의 인증을 받아야 함.

한편, ISSB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 의무화의 선두주자로 평가함. 칠레와 콜롬비아는 ISSB 공시기준의 근간이 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의 권고안과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의 산업별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멕시코도 ISSB 기준 채택을 위해 공개 토론을 진행하고 있음. 지난날 ISSB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IFRS S1의 스페인어 번역본을 발표했으며 IFRS S2의 스페인어 번역본과 S1·S2의 포르투갈어 번역본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필리핀 SEC, 상장사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개정안 의견 수렴...IFRS S1·S2 반영

10월 4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Philippin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PSEC)가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지속가능성 보고지침(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10월 16일까지 [진행](#)함. 필리핀은 2019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CoE)²⁹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했으며, PSEC에 따르면 평균 96%의 상장사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공시하고 있음. PSEC는 최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제정한 IFRS S1·S2를 포함한 최신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 제출 서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자국 보고지침 개정을 추진함.

- 서술식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Narrative): 연차 보고서와 동시에 기업의 ESG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서술식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출
- 지속가능성 보고 양식(Sustainability Report Form):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노출, 산업 공통 표준 지표,

호주, 기후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IFRS S1·S2과의 높은 정합성 확보

10월 23일 호주 회계기준위원회(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AASB)가 '호주 지속가능성 보고기준(Australi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ASRS)' [공개초안](#)을 발표함. 공개초안은 다음 세 개의 ASRS 기준안으로 구성됨.

- ASRS 1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IFRS S1 '일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baseline)으로 하되 범위를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로 제한해 개발함
- ASRS 2 '기후 관련 재무공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기준으로 활용해 개발함
- ASRS 101 'ASRS 내 참조문서(References in ASRS)': ASRS 각 기준서가 참조하는 관련 문서³⁰ 목록으로 발행기관과 버전 등을 명시하며,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임 (호주에서 발간된 비입법 문서 및 외국기관 자료 포함)

ASRS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 및 S2 기준과 높은 정합성을 보이나, 다음을 포함한 일부 차이점으로 인해 ASRS 기준(안)을 준수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수했다고 표명할 수는 없음.

	호주 기준서(ASRS 1 ASRS 2 공개초안)	ISSB 기준서(IFRS S1·S2)
공시 주제	지속가능성 공시 범위를 기후 관련 정보로 제한했으며,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채택 시점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기후 이외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도 공시해야 하나, 첫 해에는 면제 가능함.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 평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그 중 하나의 시나리오는 호주 기후변화법(Climatic Change Act 2022)에 포함된 '상업화 이전 수준 대비 평균온도 상승폭 1.5°C 미만 유지' 목표에 부합해야 함.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시 시나리오 최소 개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다만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국제협약 ³¹ 에 부합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는지 공시해야 함.

금융정책 당국 지속적으로 연기 미확정

1. 2021년 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GREENIUM

2. 2023년 5월: ESG 공시제도 로드맵 발표 예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년 3분기 내에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공시 기준, 제3자 검증 체계 등을 포함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3. 2023년 10월: ESG 공시 의무화 일정 연기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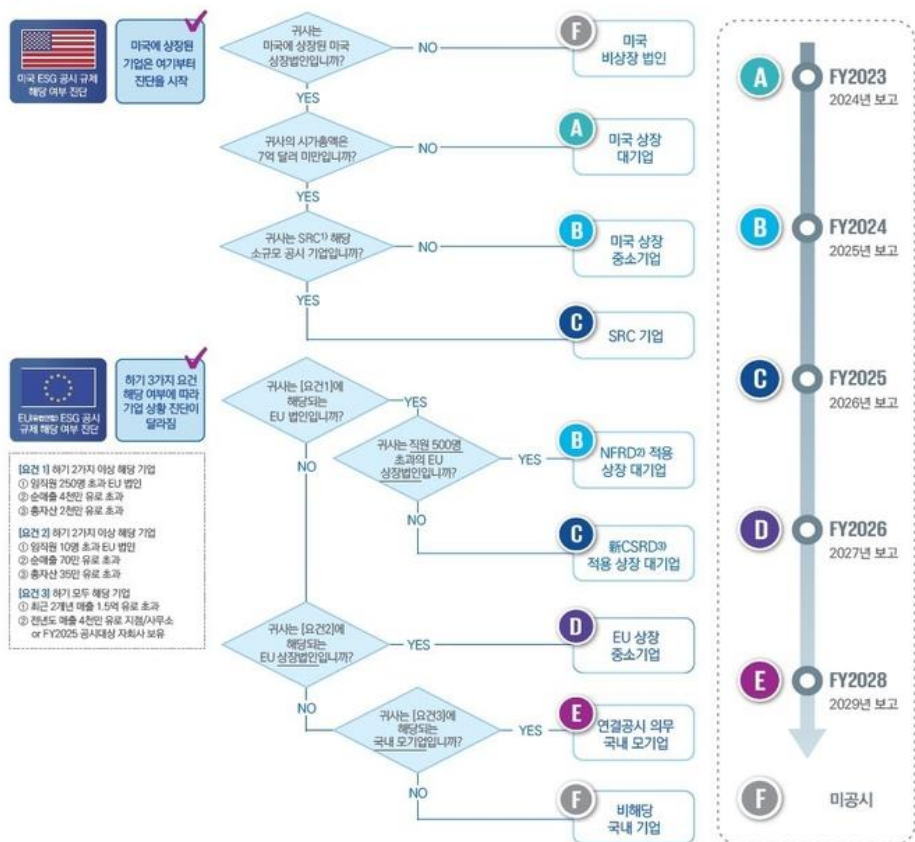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1년 이상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연기, 국제 회계기준(IFRS) 확정 지연, 기업들의 준비 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정책적 동향

글로벌 기업 의무 도입

그러나 이미 한국기업들은 이미 타 글로벌 기준 적용 대상

▶ 글로벌 ESG 공시 규제에 따른 한국 기업 상황 진단



Source: 삼성KPMG

Note: 1) SRC(Smaller Reporting Company): 유동자산 7,500만~7억 달러인 기업 중 연 매출 1억 달러 미만 기업, 2)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비재무정보공개지침
3)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금융정책 당국 지속적으로 연기 미확정

- SEC의 Proposed rule (climate related disclosure) 공시 대상 기업: 미국 또는 외국 국적의 SEC 등록기업이 기후 관련 리스크에 관한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2026년부터). 국내 기업 예) 포스코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케이비금융, 한국전력 등도 공시 대상. 국내 상장기업인 이들 기업은 미 증시에 도 증권에탁증권(DR) 등의 형태로 올라가 있음
- CSRD 역시 EU에 250명 초과 법인이 있거나, 순매출 및 총자산이 4 만유로 및 2천만 유로 초과기업은 CSRD를 도입해야 함. (한국: 삼성 전자, 현대차, SK케미칼, 포스코 등)

의무도입 시기 미정

금융위 일관된 정책 부재

금융위 확정된 바 없음

2023년 2월 17일

•내용: 국내 ESG 공시기준 검토

•발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공시·감독·투자 유도 아이디어로 ESG 금융제도 전반을 더욱 정비할 것"

2023년 4월 27일

•내용: 해외 주요국 ESG 공시기준 검토

•발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글로벌 협력을 통한 공시기준 마련에 힘쓸 것"

2023년 10월 16일

•내용: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논의

•발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주요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시장과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 체계를 추진할 것"

2024년 4월 22일

•내용: 국내 ESG 공시기준 초안 논의

•발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기후·환경부터 순차 의무화, 30일 초안 공개할 것"

컨트롤 타워

금융위 중심의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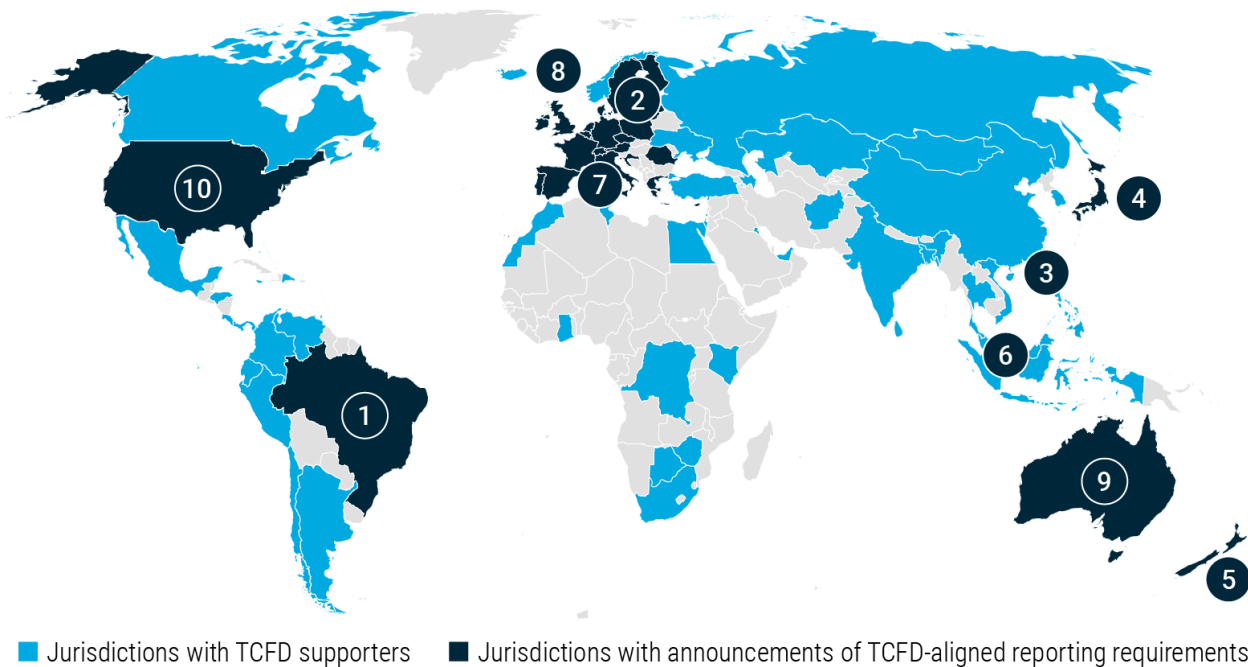
과 제	'23년	'24~'25년	담당 부처
1. ESG 공시제도 정비			
① 공시 국제표준화			
▶ESG 공시 표준화 논의 참여			금융위
▶ESG 국내 공시기준 마련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방안 마련			금융위
② 공시·정보공개제도 연계 강화			기재부, 금융위, 환경부, 고용부, 공정위
2. 중소기업 지원 강화			
①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			
▶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산업부
▶체크리스트·자가진단 고도화			중기부
▶교육·컨설팅 강화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인센티브 제공			조달청, 금융위, 중기부, 산업부
② 수출·협력 중소기업 지원 강화			-
▶ESG 공급망 실사 대응력 향상사업			산업부

과 제	'23년	'24~'25년	담당 부처
3. ESG 투자 활성화			-
① ESG 채권 발행·투자 활성화			
▶녹색분류체계 시행			환경부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사회적분류체계 마련			기재부, 산업부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기재부 등
▶ESG 지수 다양화 및 SRI채권 사후보고 강화			금융위
② ESG 평가기관 가이드런스			
▶ESG 평가기관 가이드런스 마련 및 확산			금융위
4. 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			-
① ESG 정보제공·이용 활성화			
▶ESG 플랫폼간 연계 강화			산업부, 중기부, 기재부, 환경부 등
▶ESG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			산업부, 중기부
▶환경정보·산업안전·기업집단 포털 고도화			환경부, 고용부, 공정위
② 전문인력 양성			
▶ESG 관련분야 인력을 ESG 전문가로 전환			산업부, 환경부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 신설			산업부, 환경부
▶ESG 특성화 대학원 개교			산업부, 환경부
5.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① ESG 경영 촉진			
▶공공기관 ESG 공시항목 확대			기재부
② 연금금 투자 확대			
▶국민연금 ESG 투자 확대			보건복지부
▶정책금융기관 지원 확대			금융위, 환경부

컨트롤 타워

컨트롤 타워 부재

부처별 업무 영역의 구분



홈 > 지속가능경제 > 정책·제도 > 프리미엄컨텐츠

환경부, TNFD 자연자본 공시 가이드라인 연내 제시...국내 기준은 ISSB 기반으로

▲ 이신형 기자 | ⓒ 입력 2024.03.12 19:15 | Ⓢ 수정 2024.03.21 00:33 | 댓글 0



기업 자율적인 TNFD 권고안 기반 자연자본 공시 지원 자연자본 공시 용어집 발간, 공시 보고서 시범 사업도 실시

[ESG경제=이신형기자] 환경부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의 자연자본 공시 권고안에 따라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내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에 공식 용어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실제로 TNFD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범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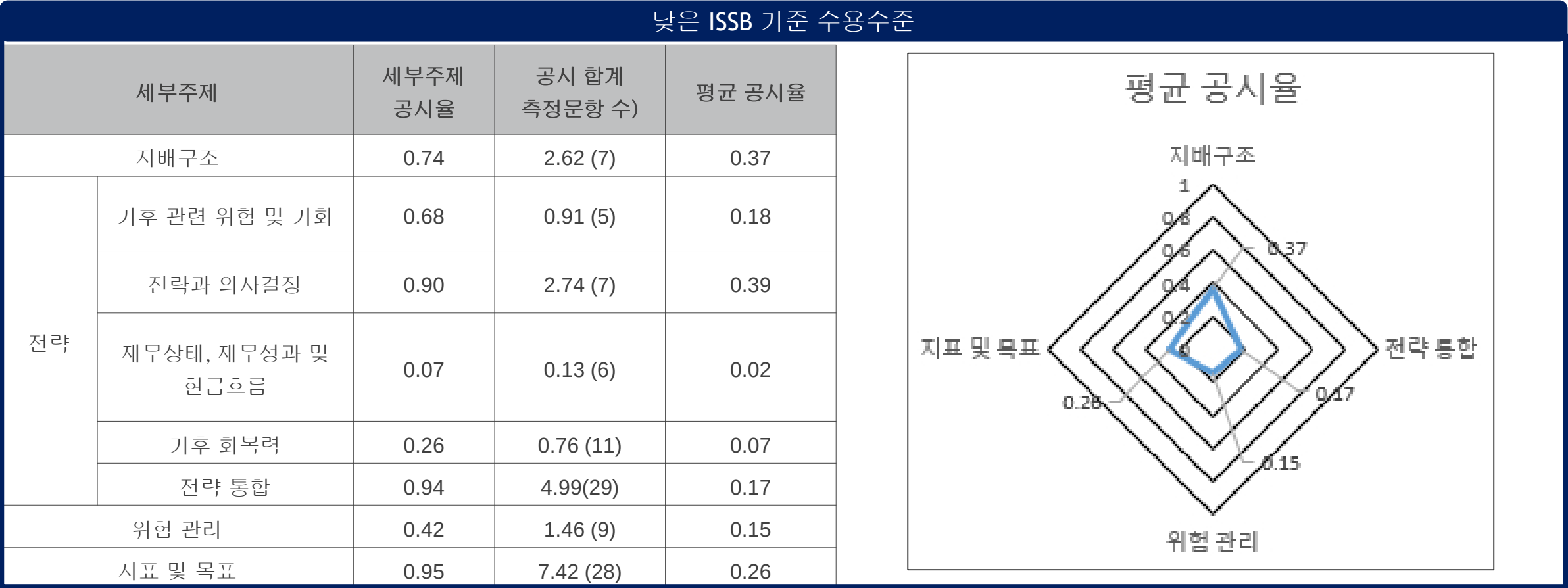
최신뉴스

- 강훈식 의원, "국제 정합성 갖춘 ESG 공시"
- COP29 에너지 저장 및 그리드 협약 37개국
- 뱅가드, 대리투표권 행사 'ESG보다 이익 우'
-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싸게 만드는 방법
- 주요국 해상풍력 목표 달성 요원...비용 급증



글로벌 정합성

현재 낮은 IFRS S1, S2 수용수준



출처: 국내지속가능성 보고서의 IFRS S1, S2 수용수준에 대한 연구 (정준희와 기도훈, 한국공인회계사회, 2023)

글로벌 정합성

KSSB 기준을 통한 글로벌 정합성을 확보

글로벌 정합성을 위해 KSSB를 중심으로 기준안을 확정

국제 정합성과 기업 수용가능성 간의 균형

국제 정합성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기후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공시 제도를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주요국의 규제는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수출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KSSB는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의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KSSB는 공시기준 공개초안 개발에 있어, 글로벌 기준선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국내 기준 제정의 시작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KSSB는 국제 회의에 참여하고, 해외의 주요 기준제정기구와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국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공시기준 공개초안 개발 시 참고하였습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IFRS 재단 내에 설립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발표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사용이 권장되는 글로벌 기준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국가에서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자국 공시기준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ISSB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과정에서 유럽, 미국 공시기준 등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공통된 사안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TCFD),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CDSB)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의무도입 시기 확정

로드맵 및 의무화 시기 확정 필요

투자자의 요구

AIGCC, 금융위에 2026년 ESG 공시 의무화 요구

이승균 기자 ☆

입력 2024.11.05 10:00 수정 2024.11.06 16:51

가

많이 본 뉴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AIGCC)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이후에도 AIGCC와 함께 기업에 ESG 관련 요청 사항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도 AIGCC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어 금융권이 이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 1 "국민연...
- 2 "이 과일...
- 3 8억 넘던...

출처: 한경 `24.11.05

정치권의 요구



IMPACT ON

산업 정책 투자·평가 특집·오피니언 업계소식 About 프리미엄 콘

홈 > 정책 > 국내

국정감사 등장한 ESG 공시 의무화...연내 로드맵 마련해야

송준호 editor | 입력 2024.10.25 07:36 | 수정 2024.10.28 06:34 | 댓글 0



- ESG 공시와 밸류업 도입 과정 천양지차...연내 로드맵 발표해야
- 공시 의무화, 늦어지면 국민연금 수익률 떨어져...2026년 도입 목표로 해야

올해 국정감사에 ESG 공시가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24일 종합감사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담당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2021년 1월, 2025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2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30년까지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출처: 임팩트온 `24.10.28

인증 도입

인증 기준 및 시기 확정 필요

글로벌 수준의 인증 기준 및 시기 확정 필요



☰ 지속가능경제 환경·사회 기업·거버넌스 공시·평가

☰ 홈 > 지속가능경제 > 정책·제도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와 동시에 인증 도입 여부 "검토 착수"

✎ 이신형 기자 | ⌚ 입력 2024.11.15 11:29 | ⌚ 수정 2024.11.15 14:03 | 💬 댓글 0



정부, IAASB 지속가능성공시 인증기준 확정 발표 주목
IOSCO 권고로 만들어진 기준...국내에도 도입 유력
국내 인증 의무화 시기나 수준은 금융당국이 결정할 문제



☰ 지속가능경제 환경·사회 기업·거버넌스 공시·평가 ESG 라이프

☰ 홈 > 공시·평가 > ESG공시 > 프리미엄컨텐츠

IAASB, ESG 공시 국제 인증기준 확정...국내 인증업계에 미칠 영향은?

✎ 김연지 기자 | ⌚ 입력 2024.11.14 18:07 | ⌚ 수정 2024.11.15 10:19 | 💬 댓글 0



ISSA 5000 도입 시 국내 ESG 인증 시장에 큰 변화 불가피
국내 기업 IAASB의 인증기준 사용 6% 불과..."수요 급증할 것"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ESG공시 내용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 기준으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신뉴스

- 강훈식 의원, 'COP29 에너지 백가드, 대리'

인증의 의무화 추진

글로벌 인증제도 도입

글로벌 수준의 인증 기준 및 시기 확정 필요

❖ ISSA 5000은 IAASB에서 개발 중인 지속가능성 보고서 인증 기준

• 특징 및 정의

글로벌 표준화: ISSA 5000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여 각국의 다양한 규제를 조율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

재무 감사와의 통합: 기존의 재무 감사 기준과 연계되며,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 정보(ESG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목표.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검토

보증 수준: ISSA 5000은 한정적 보증과 합리적 보증 두 가지 수준의 검증을 허용하여, 기업이 상황에 맞게 적합한 수준의 보증을 선택. 이는 기업의 규모, 자원, 규제 요건에 따라 보증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

• 마일스톤

• 초기 개발 단계 (2022-2023):

기초 표준 구축: IAASB는 기존의 재무 감사 기준과 ESG 보증의 특성을 통합한 ISSA 5000 초안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

글로벌 이해 관계자 협의: IAASB는 다양한 국가의 규제 기관, 회계 법인, 산업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표준의 기본 구조를 확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돌입

• 시범 적용 및 피드백 수집 (2023-2024):

시범 프로젝트: 초기 표준 초안을 바탕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실제 기업과 회계 법인들이 ISSA 5000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

피드백 수집: 시범 적용 결과와 산업, 규제 기관, 기업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표준을 개선하는 과정이 진행

• 표준 최종버전 및 발효 (2024):

최종 표준 발표: IAASB는 피드백과 분석을 토대로 ISSA 5000 최종 표준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보고서 보증의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확립. 기존 회계 감사 표준과 통합되며,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이 이를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공시만능주의 탈피

단순한 공시가 아닌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공시 (공시위치에 따라서도 정보효과 다름)

IFRS S1, 공시위치

공시의 위치

문단 32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일부로서 제공한다.

일반목적재무보고 내의 다양한 위치에 공시 가능
(예: 경영진설명서)

ISSB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이 발행한
다른 보고서를 상호참조(cross-reference)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포함 가능

상호참조 시 준수사항

- 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명확히 식별 및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설명
- ② 해당 보고서에서 상호참조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정

상호참조 시 유의사항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승인하는 기구(들)·개인(들)은 상호참조로 포함한 정보에 대해, 직접 제공한 정보와 동일한 책임 지님

인식의 변화

국내에서는 법회계(forensic accounting), 법회계감사(forensic auditing) 주의 팽배

*법회계주의는 회계부정을 법정에서 주로 가림을 가르키는 용어

- 법회계나 법회계감사에서는 표현충실성이 높은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회계부정과 관련한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부정과 오류의 적발이라든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감사인의 과실여부나 책임 및 처벌수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
- 이에 따라 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형식보다 실질(substance over form)을 존중하는 적극적 태도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명시된 관련규정의 준수여부에만 집착하는 “check box mentality” 등의 소극적 태도를 보이게 됨. 이는 궁극적으로는 회계발전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회계정보의 가치를 낮추는 것
- 또한 GAAP와 발생주의 회계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은 회계담당자에 의한 추정과 예측에 근거. Sarbanes-Oxley Act에서 잘못된 인증(false certification)에 대한 처벌은 20년 이하의 징역 and/or 5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서, 이는 중대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수위와 비슷. 그러므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상대적 합리성에 근거한 회계기준하에서 예측정보에 대한 보호도 없는 상황에서 예측정보에 대한 두려움
- 정직한 사람도 예측도 정확하게 할 수 없음. 이러한 처벌조항은 법과 회계의 괴리 확대
- 따라서 작성자 및 인증자는 미래정보를 예측하고 추정하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강한 거부감

출처: 김정재(2020) ‘재무회계 이론’, Ijiri(2005), ‘US Accounting Standards and Their Environment: A Dualistic Study of Their 75-Years of Transi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4(4), 255~279.

인식의 변화

정책당국은 여전히 하드 회계(hard accounting)를 지향. 소프트 회계(soft accounting) 지향 필요

- 계약기능(stewardship or contracting)에 유용한 정보는 사후적으로 검증가능해야 하지만(verifiable ex post), 가치평가기능(decision usefulness or valuation)에 유용한 정보는 사전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에 유용
- hard accounting이란 계약기능을 중심으로 검증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과관계에 충실한 업적지표로서의 회계이익의 개념 중 영업이익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회계적 관점인 반면, soft accounting은 새로운 경영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접근
- soft accounting 으로 변화함에 따라 감사인(auditor)의 역할에도 변화. hard accounting과 soft accounting은 입증범위와 증빙수준(level of attestation)에서 차이. soft accounting에서 입증범위는 넓히고 증빙수준은 낮추는 조정이 필요. 이러한 측면에서 감사인의 인증서비스(assurance service)라는 새로운 개념이 회계의 유용성을 증가
- 전통적인 회계감사가 투자자와 채권자를 위한 일반목적 서비스인 반면, 인증서비스는 개별 이용자의 특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정보도 포함. 또한 전통적인 회계감사가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서비스인 반면, 인증서비스는 신뢰성뿐만 아니라 목적적합성에도 관계. 그러나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hard accounting에 초점

	hard accounting	soft accounting
회계기능	계약기능	가치평가기능
질적 특성	검증가능성	표현충실성 / 목적적합성
이익의 개념	영업이익	포괄이익
추론방식	인과관계	상관관계

감사합니다

